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漁港消息

발행인 孫井植
 편집인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4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568-6651~2
 FAX. 568-6653
 www.fipa.or.kr

(月刊) 第164號

THE FISHING PORT NEWS

2001年 8月 25日(土曜日) (1)

어항청소에 관한 사무 협회에 정식 위탁 연안정화 등 어항 관련 사업도 명시

어항법시행령 개정공포 협회 업무영역 크게 확대

비관리청의 어항시설 설치 촉진과 책임감리 대상 사업인 경우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한국어항협회 업무영역의 일부 확대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어항법시행령이 지난 7월 30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2면에 신·구 조문 대비표 게재)

개정 어항법시행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어항시설의 범위에서 수산업

협동조합 등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기자재창고 및 복지회관 등을 제외하여 비관리청의 어항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사업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비관리청 어항시설사업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감리회사의 감리조서 등의 확인으로 준공확인을 갈음하도록 했다.

특히 동 시행령에서 '어항

청소선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어항청소에 관한 사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내용인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이 신설되는 한편 협회 업무를 규정하는 제32조제1호중 '연구 및 홍보'를 '연구·정보화 및 홍보'로, 그리고 동조제5호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연안정화 등 어항과 관련된 사업'으로 개정됨에 따라 협회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바다정화사업 대대적으로 추진

해양수산부는 올 하반기 해안가 쓰레기 청소를 비롯한 부유 폐어망 수거 및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등을 맡아한 바다쓰레기 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경기만 일대 특정해역에 방치, 부유되어 군함정 등 항행선박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어족자원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폐어망 수거사업을 금여기인 8.6~8.31 동안 연평도 하단·덕적도 좌상단에 위치한 152, 153해구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폐어망 수거사업은 지역어업인 및 해군의 절실한 요청과 해양수산부장관의 특별지

시에 의하여 올해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서해 특정해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해군작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해안대청소의 날인 9.15을 기점으로 9.21까지 어업인, 환경단체 등을 비롯한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합동으로 전국 해안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청소할 계획이며 해군에서도 도서지역 발생 생활쓰레기를 운송 처리하는 봉사활동을 전개, 동 행사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9월부터 연말까지 부산대포항 등 전국 20개 항만 및 어항에서 수중에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99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수중침적폐기물 수거를 포함한 바다정화사업을 올해부터 연안해역의 폐어망수거까지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연안어족 자원을 적극 보호해나가면서 2004년까지 35천톤 이상에 이르는 침적폐기물을 제거하는 한편 현재 연구중인 해양 폐기물 처리 종합시스템을 2004년까지 개발하여 바다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 및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출범 5주년 기념 현대 운동 등 이웃사랑 실천

출범 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더불어 부대행사로 이웃사랑실천운동을 실시했다.

지난 7월 30일 어항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설된 제30조제3항과, 개정된 제32조제5호이다.

그 내용을 잠시 풀어보면 먼저, 개정 어항법시행령 제30조제3항은 '어항청소선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어항 청소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던 어항청소에 관한 업무를 어항법시행령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점이고, 다음은 어항법시행령 제32조제5호는 한국어항협회의 업무영역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연안정화 등 어항과 관련된 사업'으로 크게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말 할 여지없이 창립 이래 다방면에 걸쳐 열심히 노력해온 한국어항협회의 존재를 다시 한번 주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특히 어항 청소를 비롯한 연안정화 즉 해양환경정화에 한국어항협회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노하우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실 한국어항협회가 그동안 해양환경정화를 위해 쌓아온 업적은 빛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99년 오염이 심한 어항 위주로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을 우리 협회에서 맡아 큰 성과를 올렸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협회가 직접 수임한 강원도 앞바다 침체망인양사업은 협회의 위상을 더욱 높였고, 나아가 올해는 서해특정해역 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여기서 간파해서는 안될 사항은 이런 일련의 사업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업무가 다 그러하듯이 해양환경 정화사업 역시 특별한 연구와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다행스런 것은 이런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앞서 언급한 어항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이날 행사는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소속직원과 재경지역 관련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겸소하게 치러졌으며 부대행사로는 청사앞 광장에서 '사랑의 현혈운동'과 불

되어 협회 사업 중 '연안정화 등 어항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줌으로써 앞으로 한국어항협회의 업무 영역이 크게 확대됨은 물론 해양환경정화와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이 한국어항협회의 그동안 성장 과정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환경정화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 한국어항협회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꾸준한 노력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문성을 길러왔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항협회가 갖고 있는 해양환경정화에 대한 노하우는 한마디로 경험에서 비롯된, 가장 우리 한국적 현실에 맞는 전문성을 축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기에 그동안 어항 및 해양환경정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저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 개정 공포된 어항법시행령에서 한국어항협회의 업무영역을 크게 확대 개편해 준 것이라고 믿고 싶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이다. 이미 전문성과 기술력이 검증된 이상 어항이나 해양환경정화사업을 한국어항협회에서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이 방면에 탁월한 그런 협회로 성장 발전시켜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협회 스스로도 전문성과 기술력의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지만 이는 상당 부분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의 화두는 전문가의 시대이다. 또한 21세기의 자원은 대부분 바다로 향하고 있다. 바로 그 정점에 우리가 서있는 것이다.

해양환경정화업무를 한국어항협회가 보다 전문적으로 맡아 추진하는 일이 단체 이기주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 활성화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지금이다.



■ 한국어항협회는 정부로부터 서해특정해역 부유침적 폐어망 수거사업을 수임, 지난 8월 6일 사업에 착수하여 23일 현재 폐어망 닻자망 등 262톤의 실적을 올렸다. 이 사업은 오는 8월 31일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어항협회
전문성을 인정
어항 청소·연안정화 업무 강화

개정 어항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종 전	현 행	종 전	현 행
제2조(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범위) ①법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수립한 어항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범위) ①-----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어항개발계획 1. 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삭제〉	1. (생략) 2. 관리청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부산교, 하역기계, 급유·급수를 위한 보급시설 나. - 라. (생략) 마. 기타 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1. (현행과 같음) 2. --- 토지 또는 법 제2조제3호 가록(3)의 수역시설 가. 부산교, 하역기계, 급유·급수시설, 전기수용설비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어선건조 수리장의 시설중 선박의 인양·운반을 위한 시설 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호의 시설 (1) 기지창고·수산물위생장·활어일시보관시설 및 어업용 통신시설 (2) 복지회관·체육시설·전시관 및 공연장 사. 그 밖에 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1조(공공단체의 종류)
제3조(어항정책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여 두는 어항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장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③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각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공공단체의 종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6. 기타 해양수산관계 비영리법인 제22조(어항시설의 보수등의 범위)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청이 정한다. 〈신설〉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제22조(어항시설의 보수등의 범위) ①(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관리규정으로--- 제24조의2(준확인인의 예외)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완료한 어항시설사업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으로서 준공보고서에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의2(준공전 사용신고등) ①비관리청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어항시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관리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 (생략) ②(생략) 제24조의3(생략) 제24조의4(귀속토지등의 매각) 관리청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거나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조성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당해 토지의 용도와 어항시설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간동안 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준공전 사용신고등) ① 준공확인필증 --- 1. 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24조의4(현행 제24조의3과 같음) 제24조의5(귀속토지등의 매각) --- 어항개발계획 제28조(사용료의 감면) ①(생략) ②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4. (생략) 5. 제10조의2(어항개발계획의 수립) 관리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개발계획(이하 "어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1. 4. (현행과 같음) 5. 제10조의2(어항개발계획의 수립) 관리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여건의 구조적인 변경 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지정등의 고시) 법 제6조제7항--- 1. 2. (생략) 제1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개발계획(이하 "어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지정등의 고시) 법 제6조제7항--- 1. 2. (현행과 같음) 제1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개발계획(이하 "어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1. 4. (현행과 같음) 5. 제10조의2(어항개발계획의 변경) 관리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여건의 구조적인 변경 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료의 감면) ①(생략) ②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4. (생략) 5.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관계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8조의3(어항시설의 관리비용)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점용료 및 변상금의 8할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종어항 및 제3종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제1종어항 및 제3종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29조(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의무의 이전인가를 받거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이전인가를 신청하거나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1. 4. (현행과 같음) 5. 해양수산관계 비영리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제28조의3(어항시설의 관리비용) ① 국가어항 국가어항 ②(현행과 같음) 〈삭제〉 제30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어항 --- 1. 8. (생략) 9.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및 이전신고의 수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생략) 제30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어항 및 제3종어항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해양수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8. (생략) 9.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및 이전신고의 수리(제1항제9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생략)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가어항 --- 1. 8. (현행과 같음) 9. --- 10.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개발계획의 변경중 단위시설별 규모 및 사업비의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안에서의 변경(기본시설의 변경에 한한다) 10. (현행 제1호와 같음)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14.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조치 15. 22. (생략) 2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및 이전신고의 수리(제1항제9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4. (생략) 〈신설〉
제11조(어항시설계획의 내용)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 (생략) 5. 기본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배치계획 4. (생략) 5.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제11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①법 제7조제3항--- 1. 2. (현행과 같음) 5.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②법 제7조제3항--- 1. 2. (현행과 같음) 3. 어항시설 4. (현행과 같음) 5. 어항시설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어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들고자 할 때에는 당해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생략) 2. 당해 어항시설계획의 개요 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이해관계인 및 당해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13조(주민들의 의견청취생략)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3. (생략) 4. 어항시설의 유지 보수 및 시설물의 일부 확장 축소 제13조의2(심의회의 실의성)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①법 제7조제3항--- 1. 2. (현행과 같음) 5. 어항개발계획 ②(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어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들고자 할 때에는 당해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어항개발계획 3.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3조(주민들의 의견청취) ①(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제13조(주민들의 의견청취생략) ①(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어항시설의 유지 보수 〈삭제〉	제11조(생략) 2. 13. (생략) 14.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조치 15. 22. (생략) 2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및 이전신고의 수리(제1항제9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4. (생략) 〈신설〉
제14조(개발계획 등의 협의) ①(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③(현행과 같음)	제14조(개발계획 등의 협의) ①(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③(현행과 같음)	제32조(업무) 협회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2. 4. (생략) 5. 어항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7. (생략) 제33조(과태료) ① ②(생략) ③관리청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등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100만원으로 한다.	1. 연구·정보화 및 홍보 2. 4. (현행과 같음)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연안정화 등 어항과 관련된 사업 6. 7.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 ① ②(현행과 같음) ③과태료의 부과기준은 200만원으로 하되, 관리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등기·정도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5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현행과 같음)
제15조(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①관리청은 법 제11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어항시설계획의 주요내용 또는 주요변경내용 3. (생략) ②(생략) 제15조(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①(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5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①(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7조(귀속대상외의 어항시설)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7조(귀속대상외의 어항시설) ④(생략)

동

정

해양수산부 출범5주년 기념식 거행



鄭宇澤 海洋水產部長官

▲ 정우택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8일 해양수산부 출범 5주년 기념식을 거행, 이어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에서 개최된 인천항발전특위에 참석, 21일에는 인천북항 고철부두(동국제강) 실시협약 체결식에 참석.



孫井植 韓國海事協會會長

▲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8월 2, 3 양일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7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21세기 동아시아 해양 안보의 현안과 전망'에 참석, 8일에는 해양수산부 출범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17일에는 서울행정학회 학술토론회에 참석, 18일에는 이화여대에서 열린 행정학교육워크숍에 참석.

▲ 차석홍 수협중앙회장은 8월 9일 경북영업본부를 기점으로 부산영업본부를 차례로 순시하고 직원들을 격려.

▲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8월 6일 기아타이거스 창단식에 참석, 24일에는 국창 임방울재단 기자간담회를 주재, 26일에는 광주 컨트리클럽 증설공사 준공식을 거행.

▲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8월 24일 경제4단체 주관 베트남 국가주석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24일에는 한국능률협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 최상옥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8월 7일 광주민주의종 추진위원회 설명회에 참석, 8일에는 전남대 용봉경영자 포럼에 참석, 23일에는 광주 유네스코 회의에 참석.

▲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8월 2일 강원도 지경-김화 도로공사 현장에 출장, 5일에는 수원 매송IC 현장에 출장, 8일에는 제주도 서귀포 도로공사 현장에 출장, 14일에는 진도 공사현장에 출장.

▲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8월 8일 여수 삼천포 공사현장에 출장.

인 사

▲ 해양수산부 △ 주 영국대사관 1등서기관 정순석 △ 주 미합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손재학 △ 해양수산부 근무서기관 김영석 △ 서기관 정유섭(8월 1일)

△ 안전관리관실 안전정책담당관 선박서기관 김종의 △ "해사기술담당관 선박서기관 정형택 △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장 수산부이사관 이용수 △ 어업교섭지도과장 부이사관 홍수철 △ 양식개발과장 수산서기관 김영환 △ 자원관리과장 수산부이사관 심호진 △ 안전관리관실 안전정책담당관실 서기관 정진관 △ 선박서기관 임금수 △ 공업서기관 현기진 △ 선박사무관 김해광 △ 선박사무관 심성태 △ 선박사무관 김동천 △ 해사기술담당관실 선박서기관 김규섭 △ 선박사무관 김영소 △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수산사무관 유재구 △ 어업교섭지도과 수산서기관 이경일 △ 행정사무관 최익현 △ 수산사무관 최완현 △ 수산사무관 양금철 △ 전무사무관 이현석 △ 5급상당 정동근 △ 양식개발과 행정사무관 김병찬 △

"자원관리과 행정사무관 심재현 △" 수산사무관 윤분도(8월 8일) △ 해양정책국 해양개발과장 김영석(8월 21일)

취 임

▲ 김채홍 부산공동어시장 회장은 지난 10일 제13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 전

▲ 한국수산회는 지난 8월 1일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444번지(수협둔촌동출장소 5층)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대표전화 392-5378-9, 회장·이사장실 495-8408.

▲ 전기원씨(임덕건설산업주식회사 회장)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9번지 장안타운 건영아파트 106동 902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는 전과 동일.

학 족

▲ 박해용씨(한국어항협회 전무이사)의 장남 준호 군은 오는 9월 1일(토) 오후 1시 서울 상록회관 4층 무궁화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회비 납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단체
▲ 금광기업주식회사(회장 고제철)
■ 울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오성웅)
■ 개인
▲ 김두원씨(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10호선장)
▲ 원태중씨(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12호선장)

<회비납부 안내>

2001년도 회비미납 회원께서는 아래 계좌번호로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 협 : 205-13-000492
조흥은행 : 389-01-059255
(예금주: 한국어항협회)

국가어항 10곳 연내 개발

6개항은 11월 공사발주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된 공현진항 등 10개 지역어항 개발사업이 연내 집행될 전망이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역어촌의 활용도가 높은 강원 공현진, 충남 남당, 제주 하효 등 10개 어항을 지역 거점어항으로 집중 개발키로 하고 어항별 실시설계 및 예산협의를 거쳐 오는 11월경 시공업체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어항은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신규 지정됐으며 금년도 사업비로 총 544억원이 책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어항의 경우 방파제, 접안시설 등 수산기능 외에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문화·휴양공간 등을 확충, 지역의 거점어항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연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공현진 남당 하효 원전 회진 선진포 등 6개 신규항은 실시설계 완료후 오는 11월 공사발주에 나서기로 했으며 축면 안흥 등 4개항은 정비 계획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집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국가어항 시설 사업대상 61개 어항중 총 51개항을 7월 이전에 모두 발주, 84%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목표행정소요일수를 넘을 경우 조달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수산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

해양수산부는 수산발전기금의 2001년도 운용계획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정부·민간출연금 등 총 120억원이 조성되어 수산지원관리를 위한 TAC(총허용어획량제도) 참여어업인 지원 등 5개 사업에 11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여유자금 1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이다.

계약행정 소요일수 단축

조달청은 전자 입찰 전면 실시와 때를 맞춰 입찰에 따른 행정소요 일수를 단축시키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조달수수료를 면제키로 하는 등 추가로 입찰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해 들어갔다.

전자입찰 확대에 따른 조달목표 행정소요일수(조달청이 긴급공사로 발주할 때 소요되는 일수) 단축내용을 보면 PQ공사의 경우 종전 계약요청 접수후 계약체결까지 68일로 돼 있던 것을 8일 줄여 60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정한 PQ공사 조달목표 행정소요

일수는 시설공사 계약에 필요한 표준행정소요일수(수요가 긴급하지 않은 일반공사의 정상적인 발주시 소요되는 기간) 102일보다 무려 42일이 단축되게 됐다.

또 50억원 이상공사는 55일에서 50일로,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44일에서 40일로,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35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였다.

이와 함께 장기계속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7일이던 것을 5일로 단축했다.

특히 조달청은 앞으로 수요기관 사정으로 지연된 기간을 제외한 행정소요일수가

어항청소선 소식

9월 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 명	월 일	지 역 (항)	선 장	연 락 처
어항 901호	9. 1	선유도	최동립	(휴대폰) 011-247-5592 E-mail : 901@fipa.or.kr
	9. 10 - 15	격포		
	9. 24 - 29	홍원		
어항 902호	9. 4 - 8	성동포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E-mail : 902@fipa.or.kr
어항 903호	9. 17 - 22	무안연안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E-mail : 903@fipa.or.kr
	9. 10 - 15	미량		
	9. 26 - 29	내발		
어항 904호	9. 3 - 8	안도, 돌산	박주종	(휴대폰) 011-232-5596 E-mail : 904@fipa.or.kr
어항 905호	9. 17 - 22	국동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E-mail : 905@fipa.or.kr
	9. 3 - 8	통영연안		
어항 906호	9. 17 - 22	등양, 삼덕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E-mail : 906@fipa.or.kr
	9. 10 - 15	구계		
	9. 24 - 29	읍천		
어항 907호	9. 3 - 8	임원, 장호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E-mail : 907@fipa.or.kr
	9. 17 - 22	대진, 거진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깨끗이 가꾼 바다 ! 몰래버린 밧줄하나
풍요로운 바다목장 ! 바다생명 단축한다

제13차 해외어항어촌 조사단을 모집합니다

목 적

해외선진국의 어항어촌에 대한 시책과 정비 및 환경실태를 직접 두루 살펴봄으로써 어항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항어촌에 관한 조사·연구 및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코자 함

□ 일 시 : 2001. 10. 29(월) - 11. 4(화) (6박7일)

□ 시찰국가 : 일본

□ 시찰어항

- 애마구찌현 : 仙崎어항, 湊어항
- 후쿠오카현 : 脇田어항, 神湊어항
- 오기나와현 : 糸満어항, 宜野灣어항

□ 대 상 : 어항어촌관련 공무원, 시공업체, 용역업체, 회원, 기타

□ 참가인원 : 35명 내외

□ 신청마감 : 2001. 9. 10까지 선착순

□ 전화문의 : (02)3673-2851~4

세부 일정

月 日	行 先	交 通	時 間	旅 程
제 1 일 10. 29 (月)	히로시마(廣島)현 야마구찌(山口)현	OZ162 전용버스	10:10-11:40 14:00 18:00	인천국제공항 출발 → 히로시마국제공항 도착 야마구찌현으로 이동 석식 및 호텔투숙(야마구찌산페아호텔)
제 2 일 10. 30 (火)	후쿠오카(福岡)현	전용버스	09:30-12:00 14:00 18:00	야마구찌 현 세자카(仙崎)어항 및 미나토(湊)어항 시찰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北九州市)로 이동 석식 및 호텔투숙(아하타로얄호텔)
제 3 일 10. 31 (水)	오키나와(沖繩)현 이또만(糸満)시	NH121 전용버스	10:00-12:00 14:00-16:00 18:00	후쿠오카 → 오키나와 해양박물관 및 민속촌 시찰 석식 및 호텔투숙(나하미야코호텔)
제 4 일 11. 1 (木)	오키나와(沖繩)현 이또만(糸満)시	NH121 전용버스	09:00-10:35 14:00-16:00 18:00	후쿠오카 → 오키나와 해양박물관 및 민속촌 시찰 석식 및 호텔투숙(나하미야코호텔)
제 5 일 11. 2 (金)	기노완(宜野灣) 시 나하(那霸) 시	전용버스	10:00-12:00 14:00-16:00 18:00	이또만(糸満) 어항 시찰 기노완(宜野灣) 어항 시찰 석식 및 호텔투숙(나하미야코호텔)
제 6 일 11. 3 (土)	오키나와현 오이타(大分)현 벳부(別府)	NH122 전용버스	08:30-10:05 11:00-14:00 15:00-18:00 18:00	오키나와 → 후쿠오카 후쿠오카 → 벳부 이동 종합평가 석식 및 호텔투숙(스기노이호텔)
제 7 일 11. 4 (日)	후쿠오카 인천	OZ131	10:00-12:30 13:45-15:10	후쿠오카로 이동 후쿠오카 → 인천

* 상기일정은 현지사정 또는 항공스케줄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번
비

워킹, 생감자증이 특효

최근 사회가 복잡해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식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변비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변비는 요통과 더불어 현대인이 고민의 쌍벽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만큼 변비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일반적으로 대변을 2일 이상 못보는 것을 변비라고 한다. 여기에는 개인차가 있어 대변을 매일 보면 좋은데 그렇더라도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하루에 2~3회 가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매일 화장실에 가지만 대변이 무르면서 시원스럽지 못하고 잔류감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다.

2일에 한 번 변을 보더라도 자기 몸이 이상하거나, 매일 또는 하루에 2~3회 대변을 보더라도 시원치 않으면 변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거친 피부, 여드름, 어깨결림, 변비 등은 더러워진 장과 관련이 있다. 장내 세균이 밸런스가 깨지면 소화 흡수된 단백질이나 지방에 해로운 군이 작용하여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 낸다. 대장이나 항문병의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첫번째 원인은 식물성 섬유질의 섭취부족에 있다. 식물성 섬유질에는 장 내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부풀려서 변의 양을 늘리는 기능이 있다. 장의

벽은 일정량 이상의 변이 모이지 않으면 자극을 받지 않으므로 연동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1일 20g 이상의 식물성 섬유질을 섭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수분부족이다. 몸에 이상이 없는 한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몸이 복지 않으므로 가능한 많이 마시도록 한다. 또 변을 참으면 수분이 없어져서 빠딱해지므로 절대 참아서는 안된다. 세 번째로 무리한 다이어트는 변비의 원인이 된다.

한편장을 깨끗하게 하는 전신운동으로는 워킹이 최고다. 많이 걷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대사활동도 활성화된다. 따라서 장기능도 자극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해로운 균은 점점 없어지고 폐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목욕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지만 장내 세균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식이요법으로는 섬유질이 많은 고구마 우엉 연근 한전 등을 상복한다. 그러나 위가 나쁜 사람은 섬유질이 많은 것을 피해야 하므로 과일을 자주 먹거나 꿀을 복용해도 좋으며 당근과 사과를 같아서 한 컵씩 공복에 마시면 더욱 좋다.

특히 생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겹질째로 갈아서 만든 즙을 한 번에 30~50ml씩 하루에 세 번 나누어 먹는다. 어떤 원인으로 오는 변비든 2주일만 먹으면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배우자 및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 및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上)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도 상속세 부과

예) 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

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규정된 법정상속 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2.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 본래의 상속

재산 + 증여재산 + 간주상속재산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서 ①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가 있는 물건 ②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2) 증여재산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다. ①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간주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4억원 이상인 경우와 고시하는 가액)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57]

第4章 地盤改良工

① 스트롱샌드파일공법(SSP공법)의 모래말뚝 조성순서

a. 항타선을 유도하여 케이싱파이프를 소정의 위치에 거치하고, 파이프 선단과 사면추를 수면에 설정한다.

b. 파이프가 하강하면 동시에 압축공기로 관안의 물을 배출하여 지반상 2m정도에서 압축공기를 정지하고 박아 넣는다.

c. 진동기로 파이프를 지중으로 관입시킨다.

d. 소정깊이까지 박아넣고, 물을 부으면서 속채움모래를 투입한다.

e. 속채움모래의 투입종료후, 중추를 하강시키고, 사면천단에서 모래량을 확인한다.

f. 파이프를 끌어 올리면서 진동체를 작동하여 모래를 펴서 넓힌다.

g. 모래를 보충하고, f와 같이 뽑아낸다.

h. 이상의 조작을 반복하고, 일정길이의 콤팩션파일을 형성한다.

② 맘모스 롬퍼져파일공법(MCP공법)의 모래말뚝 조성순서

a. 항타선을 유도하여 케이싱파이프를 소정위치에 장치하고 파이프 선단의 특수칼날에 모래를 물리게 한다.

b. 바이브로를 작동시켜서 파이프를 지중으로 관입시킨다.

c.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면 상부 호퍼에서 파이프내에 일정량의 모래를 투입한다.

d. 파이프를 소정의 높이까지 끌어 올리면서 파이프안의 모래를 진동 및

에어에 의하여 선단에서 밀어낸다.

e. 파이프를 일정 길이를 되쳐서 밀어낸 모래를 진동 및 특수선단에 의하여 다짐한다.

f. 다시 모래를 투입하여, 파이프를 소정높이까지 빼내서 모래를 밀어내고, 일정 길이 만큼 파이프를 되쳐서 단단하게 죄인다.

g. 이상의 조작을 반복하여 일정길이의 콤팩션파일을 형성한다.

③ 위치결정 측량

모래말뚝 타설위치의 측량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다.

a. 트랜싯(transit) 2태

개량선상으로 진행하는 3개의 풀(poll)을 설치하고, 육상 혹은 해상(측량대)의 진행하는 2점에서 트랜싯으로 개량선상의 풀을 시준하여 처리

선의 위치를 결정한다. 측량방법을 그림 4.4.8에 나타낸다.

b. 트랜싯과 광파측거의

개량선상의 전면 혹은 측면에 2개의 풀과 반사경을 설치하고, 측점에서 트랜싯과 광파측거의 의한 풀의 시준과 광파측거의에 의한 측거에 의하여 처리선의 위치를 결정한다. 측량방법을 그림 4.4.9에 나타낸다.

c. 자동위치결정 측량시스템

개량선상에 자동시준광파측거의를 설치하고 측점에 반사경을 설치한다.

광파측거의로 거리를 동시에 측정하고 계산기의 자동연산에 의하여 처리선의 위치를 화면에 표시한다. 그 표시를 보면서 처리선을 소정의 위치로 유도한다. 측량방법을 그림 4.4.10에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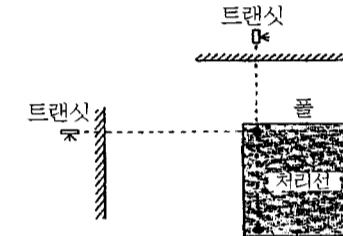


그림 4.4.8 트랜싯 2태에 의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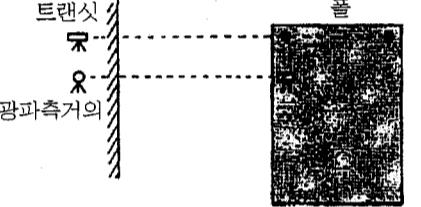


그림 4.4.9 트랜싯과 광파측거의에 의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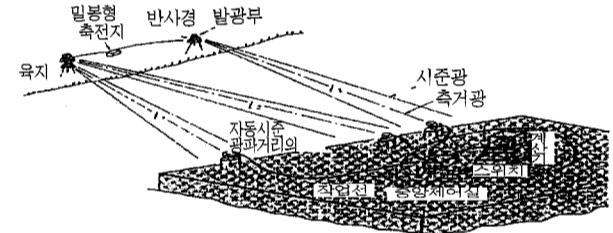


그림 4.4.10 자동위치결정 측량시스템에 의한 방법

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④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등

3. 상속세 비과세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①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③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 ④분묘에 속한 3,000평(9,900m²)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1,980m²) 이내의 묘토인 농지

4. 상속세 평산 방법

(1)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되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지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상업용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